

=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8. 26 -----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08. 8. 29
- 다. 상 정 일 자 : 제16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08. 9. 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노기섭 문화관광과장)

가. 제안이유

- 사하구청장이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사하구만의 특색을 살린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축제를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민간 주도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축제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추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축제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축제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3조, 제4조)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문화예술전문가, 의장추천 구의원, 문화예술관계 공무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구의원과 공무원은 보직기간,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재원 및 회계, 수당 등(안 제10조)

- 국·시비 및 구비보조금, 기타수입금으로 운용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2조(조례),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본 조례제정 안은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참여로 우리구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자율참여 유도 및 민·관이 함께 축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사하구 축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나. 적법성 부문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중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22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10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 위임을 명시하고 있음.

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축제조직위원회 구성 운영에는 재정적 부담이 없으나 문화예술, 축제 행사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구의 자연환경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비, 시비 보조금을 지원 받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짐.

라.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붙임 : 수정안 대비표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u>30</u>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① ----- ----- <u>20</u> 명 이내-----

※ 여타부분은 제정안과 같음